

유럽집행위원회  
복합식품의 EU 수입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번역문

유럽집행위원회,  
복합식품의 EU 수입에 관한  
질문 및 답변(2022/7/11판)

2022. 12.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본 자료는  
유럽집행위원회가 2022년 7월 11일 업데이트 게재한  
'IMPORT OF COMPOSITE PRODUCTS INTO THE EU  
- QUESTIONS & ANSWERS'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유럽집행위원회의 번역물이 아니므로  
유럽집행위원회는 번역의 정확성 및 내용에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자료 문의처 :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02-744-3975)



유럽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

식품 및 동·식물 위험 대비 식품 위생 및 식품 사기

# EU의 복합식품 수입 요건 질문 및 답변(QnA)

\*\*\*

2022년 7월 11일 판

본 문서에 인용된 EU 법률의 출처: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

# 목 차

1. 일반 사항 .....	12
1.1. 복합식품(composite food)이란 무엇인가? .....	12
1.2. 2021년 4월 21일부터 EU에 수출할 수 있는 복합식품이 종류별로 구분되는가? .....	13
1.3. 비상온 보관(non shelf-stable) 복합식품과 상온 보관(shelf-stable) 복합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	13
1.4. 복합식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13
1.5. 동물성 가공식품의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부터 복합식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나? .....	14
1.6. 2021년 4월 21일부터 복합식품의 EU 수입 규칙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 .....	14
1.7. 우리가 제조하는 복합식품에는 기술적 이유로 미량의 동물성 가공식품이 들어간다. 이 경우에도 복합식품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	14
1.8. 제과 제품(confectionery products)도 복합식품인가? .....	14
1.9.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	14
1.10.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복합식품 통제 요건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1.11. '보관 온도 조건(controlled temperature)'이란 무엇인가? .....	15
1.12. 우리의 복합식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EU) 2019/625」 제12조에 기재된 CN 코드 목록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	15
1.13. 동물성 가공식품에서 유래한 기술 성분(technological ingredients) (예: 알부민 바인더)을 동물성 미가공식품에 혼합하면 복합식품으 로 분류되는가? .....	16
1.14. 복합식품이 되려면 식물성 가공식품만 함유되어야 하나? .....	16
1.15. 동물성 미가공식품을 사용해 복합식품을 제조할 수 있나? .....	16

1.16. 식물 성분이 들어간 동물성 가공식품과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어떻게 구분하나? .....	16
1.17. 동물성 미가공식품과 식물성 제품이 혼합된 제품은 복합식품인가? .....	17
1.18. 우리는 동물성 가공식품에 식물 화합물(plant compound)을 첨가한다. 이 경우 그 최종식품이 항상 복합식품으로 간주되나? .....	17
1.19. 우리 제품은 100%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가공보조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복합식품에 해당하는가? .....	17
1.20. 커피와 유제품이 모두 함유된 캡슐 커피 제품은 복합식품인가? .....	17
1.21.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복합식품 생산 공장에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해) 제조되어 동물 유래 성분이 미량 포함될 수도 있는 경우, 이러한 제품도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는가? .....	17
1.22. EU를 경유하는 복합식품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	18
1.23. 우리의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어류 유래 젤라틴이 함유되어 있다. 해당 복합식품의 EU 반입 요건은 무엇인가? .....	18
1.24. 우리의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돼지에서 유래한 젤라틴 또는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다. 이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EU 반입 요건은 무엇인가? .....	18
1.25. 우리 생산 시설에서는 유제품과 식물성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제조에 쓰이는 분유도 우리 시설에서 재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우리 시설은 EU 승인이 필요한가? .....	19
<b>2.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관련 요건 .....</b>	<b>20</b>
2.1. 복합식품 제조에 쓰이는 동물성 가공식품은 그 출처(source)가 어디라도 상관없는가? .....	20
2.2. 이제부터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성 가공식품을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1
2.3. 우리나라는 제3국에 소재한 EU 승인 시설에서 수산제품이나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재가공해 복합식품을 제조한다. 이 수산제품의 재가공 시설도 EU의 승인이 필요한가? .....	21
2.4. 복합식품에 식물 추출물(식물 유래)과 미량의 수산제품(또는 미량의	

-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복합식품 제조 시설과 동물성 가공식품 제조 시설이 모두 EU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가? ..... 21
- 2.5. 우리는 제3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EU 승인 시설에서 유래한 육류 제품으로 복합식품을 제조한다. 이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22
- 2.6. 유당(lactose)도 동물성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나? ..... 23
- 2.7.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제조 시설은 동물 유래 재료의 비율과 무관하게, 예컨대 그 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EU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23
- 2.8. EU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국내 가공 시설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우리 시설에서 복합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면 제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 23
- 2.9.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복합식품의 수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무엇인가? ..... 23
- 2.10.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에 적용되는 동물보건 요건이 있는가? ..... 24
- 2.11.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다. 해당 복합식품의 수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무엇인가? ..... 25
- 2.12. 우리가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동물성 가공식품은 해당 동물 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또 다른 제3국에서 조달한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residues monitoring plan)을 승인받아야 하나? ..... 26
- 2.13.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첨가물도 동물성 가공식품인가? 식물성 제품에 해당 첨가물을 사용하면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는가? ..... 26
- 2.14. 식용 라놀린 생산 시설은 EU 승인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복합식품에 사용할 라놀린 유래 비타민 D는 어떻게 조달 하나? ..... 26

2.15. 우리가 복합식품에 사용하는 알부민은 소의 혈청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알부민도 육류 제품으로 간주되는가? .....	26
2.16. 조식용 시리얼 같은 제품은 가공된 꿀이 유일한 동물성 가공식품이다. 이런 제품의 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	27
2.17. 조식용 시리얼처럼 식물 유래 식품으로 만들어지고, 동물 유래 식품으로는 꿀만 함유된 제품의 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	27
2.18. 마요네즈 등 일부 복합식품에 많이 쓰이는 건조 난황이 들어간 복합식품 수입 시, 적절한 열처리 요건은 무엇인가? .....	27
2.19. 우리의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은 비타민 D3가 유일하다. 이 복합식품의 EU 수출 요건은 무엇인가? .....	28
<b>3. 복합식품의 원산국 관련 요건 .....</b>	<b>29</b>
3.1.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으로 만든 육류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이 복합식품의 EU 수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무엇인가? .....	31
3.2. 우리나라는 꿀에 대해서만 EU 수출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이 경우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32
3.3. 우리나라는 수산 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았다. 이 경우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32
3.4. 우리나라는 수산 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았다. 이 경우 육류가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32
3.5. 우리나라는 육류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았다. 이 경우 유제품이 함유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32
3.6.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기만 하면 어떤 복합식품이든 EU에 수출이 가능한가? .....	33
3.7. 제3국이 EU 승인 시설의 유제품을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경우, 2021년 4월 21일부터는 해당 아이스크림을 수출할 수 있는가? .....	33
3.8. 유제품이나 수산제품, 난류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은 자국이 승인받은 동물성 가공식품과 관계없이, 최종 복합식품에	

합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기만 하면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33
3.9. 우리나라는 복합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잔류물질 관련 요건은 무엇인가? .....	34
3.10.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제3국은 수산제품의 EU 수출이 승인된 제3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양식산) 수산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은 승인받았으나 유제품과 난류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제3국이 EU 회원국 또는 EU 수출이 승인된 다른 제3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들어갈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복합식품을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	35
3.11. EU는 제3국 소재 복합식품 제조 승인 시설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 있는가? .....	35
3.12.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을 모두 EU 회원국 또는 EU 수출 승인국에 등재된 제3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야 하나? .....	35
3.13.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로 「위원회 결정 2011/163/EU」에 등재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36
3.14. 향후 EU는 EU에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특정 제3국 목록을 작성할 예정인가? .....	36
3.15. 우리나라는 현재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EU 수출 승인국으로 등재된 품목이 없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기등재된 다른 제3국의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가? .....	36
<b>4. 복합식품의 EU 수입 시 첨부되는 보증 서류 .....</b>	<b>37</b>
4.1. 가공육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도 사설인증서 (private attestation)가 항상 첨부되어야 하나? 일정 주기마다 인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가? .....	37
4.2. 복합식품의 첨부 서류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 .....	37



- 4.3. 가공육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사설인증서는 누가  
검사하고, 어디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가? ..... 37
- 4.4. 복합식품에 사설인증서 미첨부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37
- 4.5.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에는 복합식품의 EU 반입 시 요구  
되는 동물보건 또는 정부증명서 서식(model animal health/official  
certificate)이 제시되어 있다. 가공된 동물 제품이 아닌 신선육(또는  
손질육)이 함유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 ..... 37
- 4.6. 젤라틴이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하려고 한다. 어떤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하나? ..... 38
- 4.7. 우리나라는 젤라틴(또는 콜라겐이나 고도 정제 제품) 및 기타 가공육이  
포함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한다. 여기에  
필요한 증명서는 무엇인가? ..... 38
- 4.8. 우리나라는 「규정(EU) 2021/630」에 등재된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예정이다. 첨부해야 하는 보증 서류는 무엇인가? ..... 38
- 4.9. 사설인증서를 무역통제전문가시스템(TRACES)에 업로드해야 하나? ..... 39
- 4.10. 사설인증서는 서면으로 국경통제소에 제출해야 하나? ..... 39
- 4.11. 사설인증서에 전자 서명이 가능한가? ..... 39
- 4.12. 우유 생산 농가가 EU 역내에 있는 경우에도 농가 코드를 사설  
인증서에 기재해야 하나? ..... 39
- 4.13. 사설인증서를 요하는 복합식품의 경우, 그 안에 함유된 유제품  
재료에 대한 정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가? ..... 39
- 4.14. 젤라틴이 함유된 복합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 39
- 4.15.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사설 인증서 작성 시 복합식품에 함유된  
재료의 비율 정보를 그룹화할 수 있는가? ..... 40
- 4.16. 사설인증서 첨부는 제품별로 해야 하나 아니면 화물별로 해야  
하나? ..... 40
- 4.17. 복합식품의 원재료가 복합식품 자체인 경우 두 제품 모두 사설  
인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 40
- 4.18. 우리의 복합식품은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식품이고 저위험

- 제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적절한 위험 완화 처리를 통해 동물의 보건상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 ..... 40
- 4.19.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의 무역용 견본 및 전시용 제품, 시식용으로 수입된 무역용 견본, 실험용 견본을 제3국에서 EU로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들 제품도 화물별로 사설인증서가 필요한가? ..... 41
- 4.20. CN 코드 1806으로 분류된 초콜릿 과자류(상온 보관, 육류 미함유)는 EU에서 최초 제조되어 보관 목적으로 제3국에 수출되었다. 해당 제품을 EU로 재수출 시 사설인증서만 첨부하면 되는가? ..... 41
- 4.21. 렌더링된(renderd) 동물 지방이 함유된 복합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 41
- 4.22. 경유 중인 복합식품에도 사설 인증서나 정부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경유 중인 복합식품이란 제3국에서 제조되어 EU의 세관 통제에 따라 장치장에 보관되었다가 EU 회원국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고 제3국에 재수출되는 제품을 말한다. .... 41
- 4.23. 국경통제소의 검사가 면제된 복합식품의 경우 사설인증서 보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41
- 4.24. 사설인증서에 서명하는 식품 수입 사업자의 대표는 EU에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나? ..... 41
- 4.25. 소 또는 돼지 젤라틴이 함유된 제과 제품에 사설인증서가 필요한가? ... 42
- 4.26.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1/630」에 따라 국경 통제가 면제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복합식품에도 사설인증서가 필요한가? ..... 42
- 4.27. 우리는 여러 복합식품을 하나로 포장해 수출한다. 이 경우 복합식품별로 인증서를 작성해야 하나? ..... 42
- 4.28.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배치(batch)가 여러 EU 회원국에 나뉘어 유통되는 경우, 로트별로 사설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아울러 사설인증서를 도착 예정 EU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나? ..... 42
- 4.29. 사설인증서에 차량 번호판과 선박 정보도 기입해야 하나? ..... 43
- 4.30. 복합식품 제조 시설이 EU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 증명서의 1.11칸에는 무슨 내용을 기입하나? ……	43
4.31. 관련이 있는 경우, EU에 반입되거나 EU를 경유할 예정인 복합 식품의 필수 증명서에서 파트 1 I.27칸의 ‘화물 정보’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43
<b>5. 국경 통제</b> ……	<b>44</b>
5.1. EU 반입 시 공식통제가 필요한 복합식품은 무엇인가? ……	44
5.2. EU의 국경 통제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이 수정될 수도 있는가? ……	44
5.3. 사설인증서를 첨부할 수 있는 복합식품은 모두 국경 검사가 면제 되는가? ……	44
5.4.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요건은 「위원회 결정 2007/275/EC」에 명시된 저위험 복합식품에도 적용되는가? ……	44
5.5. 육류가 함유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국경 검사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	45

## 2021년 6월 11일 판 대비 변경 사항

### 질문 수정

- 1.2
- 1.12
- 1.15
- 1.20
- 1.22부터 1.24
- 2.9부터 2.14
- 2.16 및 2.17
- 3.8
- 3.12
- 4.1
- 4.3
- 4.6 및 4.7
- 4.14
- 4.21 및 4.22
- 4.25
-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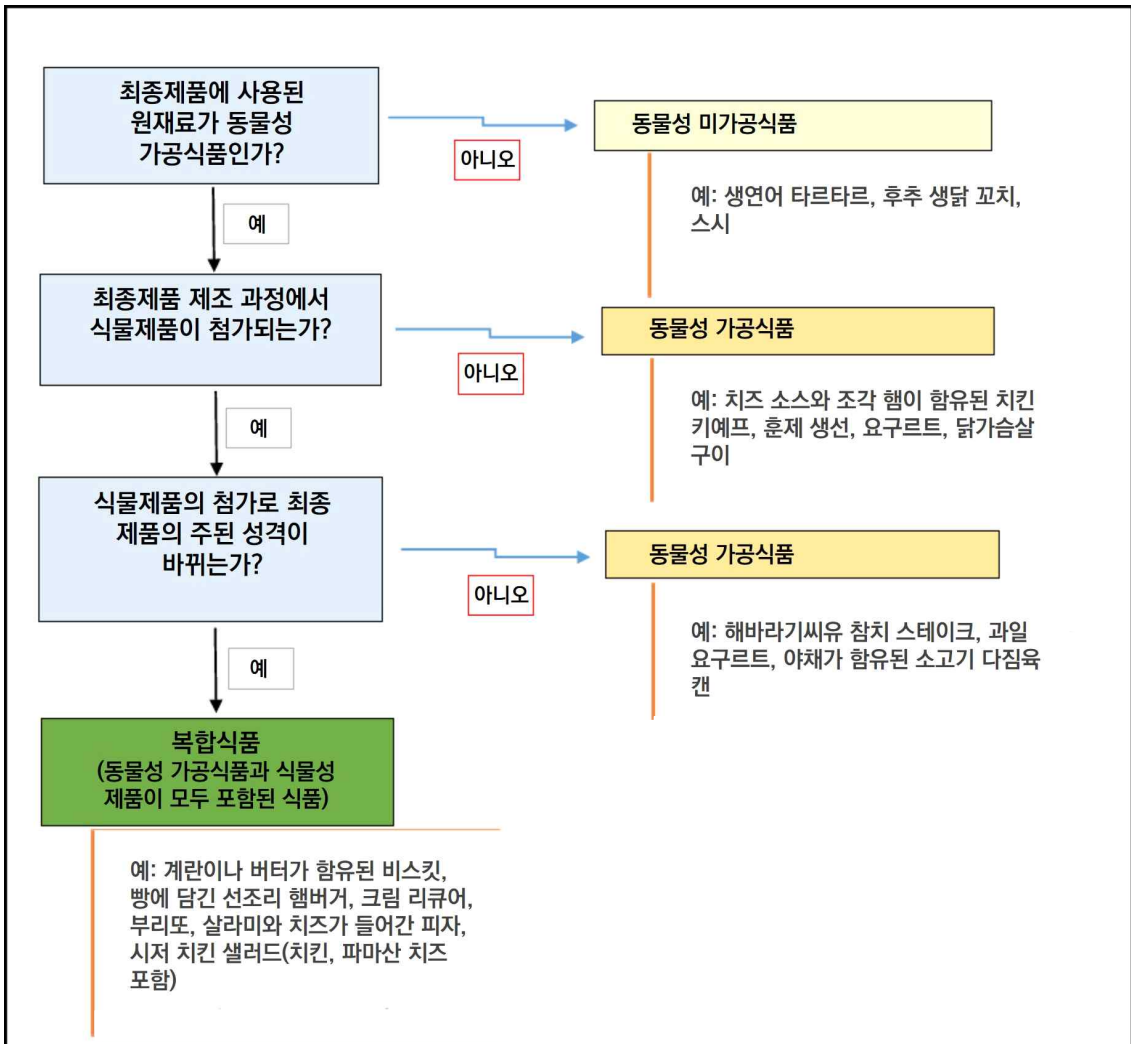
### 질문 추가

- 2.19

# 1. 일반 사항

## 1.1. 복합식품이란 무엇인가?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이란 동물성 가공식품(processed products of animal origin)과 식물성 제품(products of plant origin)이 모두 포함된 식품을 말합니다. 복합식품과 동물성 가공식품(PPAO), 그리고 복합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복합식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개의 식품별로 결정되어야 하나 아래 결정 트리를 활용해 일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1.2. 2021년 4월 21일부터 EU에 수출할 수 있는 복합식품이 종류별로 구분되는가?

네.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12조에 규정된 복합식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상온 보관(non shelf-stable) 복합식품
- (2) 상온 보관(shelf-stable) 복합식품(젤라틴,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 포함)
- (3) 상온 보관 복합식품(젤라틴,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 불포함)

복합식품의 종류에 따라 첨부되는 보증 서류 및 원산국 요건도 달라집니다. 단,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에는 식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1.3.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과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보관 온도 조건(controlled temperature)에서 운송이나 보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반해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실온에서 운송이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 1.4. 복합식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규정 (EC) 852/2004」 제2조 (1)(m)항의 정의에 따라 동물성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식물성 제품을 첨가하더라도 그 최종식품이 무조건 복합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제품의 첨가로 최종식품의 주된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종식품은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제품은 동물성 식품에 특별한 성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동물성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규정 (EC) 852/2004」 제2조 (1)(o)항).

예를 들어 치즈나 발효유는 각각 허브나 과일이 첨가되더라도 여전히 유제품에 해당합니다. 캔에 담긴 참치 역시 식물성 오일이 첨가되더라도 수산제품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식품들은 「규정 (EC) 853/2004」에 따라 승인된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1.5. 동물성 가공식품의 비율이 몇 퍼센트일 때부터 복합식품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나?**

복합식품 관련 규칙은 특정 식품이 동물성 가공식품과 식물성 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비율과는 무관합니다.

**1.6. 2021년 4월 21일부터 복합식품의 EU 수입 규칙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비율을 기준으로 통관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재료(ingredients of animal origin)가 동물보건 또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에 따라, 그리고 복합식품의 운송이나 보관 시 보관 온도 조건의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1.7. 우리가 제조하는 복합식품에는 기술적 이유로 미량의 동물성 가공식품이 들어간다. 이 경우에도 복합식품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네.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규칙을 결정할 때 동물성 재료의 함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 제과 제품(confectionery products)도 복합식품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가공식품이 모두 함유된 경우에만 복합식품으로 분류됩니다.

**1.9.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복합식품 제조에 관한 위생 요건은 「규정 (EC) 852/2004」 제3조에서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합식품의 수입 관련 요건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12조~제14조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제162조 및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식품의 종류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와 사설인증서는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III의 제50장과 부속서 V에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EU에 복합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제3국 목록은 육류제품과 수산제품, 유제품 및 초유 기반 제품,

난류제품의 EU 수출이 승인된 제3국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결정 2011/163/EU」는 가공을 거쳐 복합식품에 함유되는 동물성 식품의 잔류물질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한편 저위험 복합식품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에 의거하여 국경통제소의 공식통제가 면제됩니다. 단, 그러한 저위험 복합식품은 도착지 또는 역내 유통 허가장소 또는 화물관리 사업자의 장치장이나 보세구역에서 통제조치가 진행됩니다.

#### 1.10.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복합식품 통제 요건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복합식품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상온 보관 가능 여부와 (동물 보건 관련 위험이 있는) 육류 함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복합식품의 위험성에 관한 2012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견해를 고려한 것입니다<sup>1</sup>.

#### 1.11. '보관 온도 조건(Controlled temperature)'이란 무엇인가?

'보관 온도 조건'은 운송과 보관이 상온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밀크초콜릿을 액상 형태로 운송하는 경우처럼 기술상의 이유나 품질 보존을 위해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보관 온도 조건으로 운송 또는 보관하기로 한 경우, 그 온도가 0°C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상온 보관 복합식품 관련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관 온도 조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해당 복합식품과 기타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설인증서에 그러한 설명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 1.12. 우리의 복합식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12조에 기재된 CN 코드 목록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CN 코드 목록은 필요시마다 갱신됩니다. 단,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12조의 CN 코드 목록에 없는 복합식품에는 해당 규정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합식품이 제12조의 CN 코드에 해당

1 EFSA Journal 2012; 10(5):2662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2903/j.efsa.2012.2662>



하지 않는 경우,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은 「규정 (EC) 853/2004」를 준수해야 합니다.

**1.13. 동물성 가공식품에서 유래한 기술 성분(technological ingredients) (예: 알부민 바인더)을 동물성 미가공식품에 혼합하면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는가?**

아닙니다. 우선 식물성 제품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고 동물성 미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조된 최종식품은 복합식품이 아닙니다.

**1.14. 복합식품이 되려면 식물성 가공식품만 포함되어야 하나?**

아닙니다. 복합식품이 되려면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가공식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복합식품 제조에 식물성 가공식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1.15. 동물성 미가공식품을 사용해 복합식품을 제조할 수 있나?**

동물성 미가공식품으로 복합식품을 제조할 수는 있지만 최종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물 유래 식품의 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복합식품 제조 시설은 「규정 (EC) 853/2004」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식품을 실제로 제조하기 전에 해당 복합제품의 재료가 되는 동물성 가공식품을 귀하의 시설에서 재가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1.16. 식물 성분이 들어간 동물성 가공식품과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어떻게 구분하나?**

동물성 가공식품에 식물성 제품을 첨가하더라도 그 최종식품이 무조건 「규정 (EC) 853/2004」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의미 또는 복합식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제품의 첨가로 최종식품의 주된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종식품은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즈나 발효유는 각각 허브나 과일이 추가되더라도 여전히 유제품에 해당합니다. 이 유제품들은 「규정 (EC) 853/2004」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제품에 사용된 다양한 제조법을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국경통제소 직원에게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해당 제품의 복합식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결정을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물리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17. 동물성 미가공식품과 식물성 제품이 혼합된 제품은 복합식품인가?**

아닙니다. 그러한 식품에는 동물성 미가공식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8. 우리는 동물성 가공식품에 식물 화합물을 첨가한다. 이 경우 그 최종 식품이 항상 복합식품으로 간주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 (EC) 852/2004」 제2조 (1)(m)항의 정의에 따라 동물성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식물성 제품을 첨가하더라도 그 최종식품이 무조건 복합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성 제품의 첨가로 최종식품의 주된 특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종식품은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9. 우리 제품은 100%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가공 보조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복합식품에 해당하는가?**

아닙니다. EU의 정의에 따르면 가공 보조제는 제품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0. 커피와 유제품이 모두 함유된 캡슐 커피 제품은 복합식품인가?**

커피와 유제품이 같은 캡슐에 들어 있다면 복합식품에 해당되어 관련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커피와 유제품이 각기 다른 캡슐에 담겨 제공되는 경우에는 복합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유 성분은 기타 유제품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1.21. 동물성 성분(component)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 복합식품 생산 공장에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해) 제조되어 동물성 성분이 미량 포함될 수도 있는 경우 그러한 제품도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는가?**

아닙니다. 제품 간 교차오염이 있다고 해서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항상 준수함으로써 그러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22. EU를 경유(in transit)하는 복합식품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EU를 경유하는 복합식품은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EU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합식품의 EU 반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동물 보건상의 이유로 일부 비상온 보관 식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나 가공육(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제외)을 함유한 일부 상온 보관 식품에는 특정 보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III의 제52장에 기재된 동물보건 증명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1.23. 우리의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어류 유래 젤라틴이 함유되어 있다. 해당 복합식품의 EU 반입 요건은 무엇인가?

식품에 가공육이나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콜라겐이나 젤라틴,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관련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럽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sup>2</su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젤라틴의 원료 물질(어류 유래)에 따라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 관련 요건도 달라진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어류 젤라틴은 육류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국가가 육류제품 반입 승인국 목록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합식품 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육류 제품이나 수산제품, 유제품, 난류제품 중 하나에 대한 반입 승인국 목록 (각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의무 포함)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 1.24. 우리의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돼지에서 유래한 젤라틴 또는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다. 이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EU 반입 요건은 무엇인가?

복합식품에 기타 가공육이나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복합식품에는 콜라겐이나 젤라틴,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기타 가공육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관련 요건이 적용됩니다.

<sup>2</sup> 유럽집행위원회, 복합식품의 EU 반입 조건  
([https://food.ec.europa.eu/horizontal-topics/international-affairs/eu-entry-conditions/comp-osite-products\\_en](https://food.ec.europa.eu/horizontal-topics/international-affairs/eu-entry-conditions/comp-osite-products_en))

자세한 내용은 복합식품의 EU 반입 조건이 기술된 유럽집행위원회의 웹사이트<sup>3</su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은 해당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수출(잔류물질 모니터링 의무 포함)을 승인받은 국가에 소재한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육류제품의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제3국이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5」의 관련 부속서에 명시된 젤라틴 또는 콜라겐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3국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원료가 된 축종 또는 제품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EU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젤라틴과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에는 그러한 잔류물질 관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복합식품의 EU 반입을 위해서는 사설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25. 우리 생산 시설에서는 유제품과 식물성 원료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제조에 쓰이는 분유도 우리 시설에서 재가공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우리 시설은 EU 승인이 필요한가?**

복합식품(위 사례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해당 복합식품에 혼합될 동물성 재료(여기서는 유제품)를 가공 또는 재가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EU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sup>3</sup> 유럽집행위원회, 복합식품의 EU 반입 조건  
([https://food.ec.europa.eu/horizontal-topics/international-affairs/eu-entry-conditions/composite-products\\_en](https://food.ec.europa.eu/horizontal-topics/international-affairs/eu-entry-conditions/composite-products_en))

## 2.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관련 요건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에 관한 일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식품은 「규정 (EC) 852/2004」에 규정된, 식품 관련 일반 위생 규칙을 비롯해 관련이 있는 경우 「규정 (EC) 853/2004」에 규정된,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동물성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의 동물보건 관련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시설(establishment)은, 해당 동물성 가공식품에 「규정 (EC) 853/2004」 부속서 III의 세부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EU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 원산국(third country of origin)은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또는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5」에 기재된 EU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제3국은 또한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기재된 잔류물질 승인국 목록에도 등재되어야 합니다. 동물보건상의 이유로, 동물성 가공식품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 (1) 복합식품 제조가 승인된 제3국과 동일한 국가
- (2) EU 역내
- (3) 특정 위험 완화 처리 없이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이 경우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제3국도 동일한 조건으로 EU 반입 승인 필요)

### 2.1. 복합식품 제조에 쓰이는 동물성 가공식품은 그 출처(source)가 어디라도 상관없는가?

아닙니다. 2006년 발효된 「규정 (EC) 853/2004」 제1조 (2)항에는, 복합식품 제조에 쓰이는 동물성 가공식품은 동 규정의 요건에 따라 조달과 취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가공식품은 EU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소재한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3국은 EU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 시설은 (EU의 위생 규칙을 준수한다는) 제3국 권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집행위원회의 무역통제전문가시스템(TRACES,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에 적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제3국은 또한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기재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국 목록에도 등재되어야 합니다.

**2.2. 이제부터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성 가공식품을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요건은 이미 200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규정 (EC) 853/2004」는 복합식품을 주제로 다루지는 않지만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재료로만 복합식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3. 우리나라는 제3국에 소재한 EU 승인 시설에서 수산제품이나 수산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재가공해 복합식품을 제조한다. 이 수산제품의 재가공 시설도 EU의 승인이 필요한가?**

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요건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재료가 특정 시설에서 가공이나 재가공을 거쳐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가공 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물 유래 재료를 가공 또는 재가공하는 것과 복합식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은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2.4. 복합식품에 식물 추출물(식물 유래)과 미량의 수산 제품(또는 미량의 기타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복합식품 제조 시설과 동물성 가공식품 제조 시설이 모두 EU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의 제조 시설만 EU의 승인 및 집행위원회의 무역통제전문가시스템(TRACES) 등록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5조에 명시된 제품의 화물을 출하, 조달, 또는 제조(preparing)하는 시설은 「규정 (EU) 2017/625」 제127조 (3)(e)(ii)항과 동 조 (3)(e)(iii)항에 따라 작성 및 갱신되는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2.5. 우리는 제3국에 제조 시설을 두고 EU 승인 시설에서 유래한 육류제품으로 복합식품을 제조한다. 이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나?**

복합식품이 비상온 보관 식품인 경우, 해당 복합식품의 제조 시설이 소재한 국가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EU 수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한편 복합식품이 상온 보관 식품이고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및 기타 동물 유래 식품이 함유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의 제조 시설이 소재한 제3국은 복합식품에 함유된 가공육에 대해 EU 수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가공육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공육과 관련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과 동물 보건 상태, 해당 가공육의 원산국 등에 관한 보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잔류물질과 관련하여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식품 각각에 대해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EU 반입 승인국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기등재된 제3국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을 조달하는 경우,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그러한 조달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기의 결정에 등재됨으로써 해당 동물성 가공식품의 조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성 식품의 EU 반입에 필요한 모든 동물 보건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한편 (해당 동물성 가공식품이) 다음 중 한 곳에서 조달된 경우에만 EU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a) 복합식품 제조가 승인된 제3국과 동일한 국가
- (b) EU 역내
- (c) 특정 위험 완화 처리 없이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이 경우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제3국도 동일한 조건으로 EU 반입 승인 필요)

## 2.6. 유당도 동물성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나?

네. 유당도 동물성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되어야 하고 유제품의 EU 수출이 허가된 제3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해당 유당을 추출한 원유 역시 잔류물질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제3국은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우유 반입 승인국(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국)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2.7.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제조 시설은 동물성 재료의 비율과 무관하게, 예컨대 그 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EU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네. 「규정 (EC) 853/2004」 부속서 III에 특정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모든 동물성 가공식품은 복합식품에 포함된 비율과 관계없이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EU의 식품 위생 법률(「규정 (EC) 853/2004」)이 시행된 2006년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 2.8. EU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국내 가공 시설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우리 시설에서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제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동물성 가공식품을 출하, 조달, 제조하는 시설은 먼저 귀하의 국가에서 권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EU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은 「규정 (EC) 853/2004」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설을 승인하는 권한 당국은 시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사업자가 EU의 규칙에 따라 동물 유래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한 당국은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 후 집행위원회의 무역통제전문가시스템(TRACES)에 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 2.9.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비상은 보관 복합식품에는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복합식품의 수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무엇인가?

비상은 보관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EU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한 경우에만 EU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물성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제3국은 해당 축종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얻고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그러한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성 식품의 EU 반입에 필요한 모든 동물보건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반입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해당 동물성 가공식품은 복합식품 제조가 승인된 제3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또는 EU 역내에서, 또는 특정 위험 완화 처리 없이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이 경우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제3국도 동일한 조건으로 EU 반입을 승인받아야 함)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 2.10.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에 적용되는 동물보건 요건이 있나?

네, 있습니다.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EU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한 경우에만 EU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그러한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성 식품의 EU 반입에 필요한 모든 동물보건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반입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해당 동물성 가공식품은 복합식품 제조가 승인된 제3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또는 EU 역내에서, 또는 특정 위험 완화 처리 없이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이 경우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제3국도 동일한 조건으로 EU 반입을 승인받아야 함)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만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하단의 동물보건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EU 반입이 허용됩니다.

- (a)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의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EU로 원유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b)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의 A열 또는 B열에 언급된, 우유의 원산 축종 관련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친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위험 완화 처리를 조건으로 유제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c) 착유한 축종과 관계없이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최소한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의 B열의 조치에 준하는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친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I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규정 (EU) 2017/625」에 의거하여 원유 또는 유제품의 EU 반입은 승인되지 않았으나 육류제품이나 난류 제품, 수산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이 승인된 제3국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d) 복합식품에 함유된 난류 제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I의 조치에 준하는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친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IX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규정 (EU) 2017/625」에 의거하여 난류제품의 EU 반입은 승인되지 않았으나 육류제품이나 유제품, 수산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이 승인된 제3국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2.11.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복합식품의 수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무엇인가?**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이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육류 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EU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복합식품에 함유된 가공육은 공중보건 요건을 비롯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성 식품의 EU 반입에 필요한 모든 동물보건 관련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성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제3국 역시 해당 축종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얻고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2.12. 우리가 복합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동물성 가공식품은 해당 동물 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또 다른 제3국에서 조달한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도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네.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하고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유래한 축종 또는 제품 각각에 대한 반입 승인국으로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13.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첨가물도 동물성 가공식품인가? 식물성 제품에 이 첨가물을 사용하면 복합식품으로 분류되는가?**

네. 다만 최종 복합식품에 함유된 모든 동물성 가공식품이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332/2008」이나 「규정 (EC) No 1333/2008」, 「규정 (EC) No 1334/2008」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해당 규정들에 의거하여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경우, 「규정 (EC) 2019/625」에 명시된 제3국 및 잔류 물질 모니터링 계획 관련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4. 식용 라놀린 생산 시설은 EU 승인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복합식품에 사용할 라놀린 유래 비타민 D는 어떻게 조달하나?**

라놀린 생산 시설이 EU 승인 목록에 없는 것은 「규정 (EC) No 853/2004」 부속서 III에 라놀린 관련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놀린에서 유래하는 비타민 D는 소형 반추 동물에서 유래하는 '기타 동물성 식품'의 수입 승인국(잔류 물질 승인 포함)에 등재된 제3국의 시설 또는 EU 역내 시설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2.15. 우리가 복합식품에 사용하는 알부민은 소의 혈청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알부민도 육류 제품으로 간주되는가?**

네.

**2.16. 조식용 시리얼 같은 제품은 가공된 꿀이 유일한 동물성 가공식품이다.  
이런 제품의 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규정 (EC) No 853/2004」 부속서 III에 꿀에 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가공된 꿀이 유일한 동물성 가공식품인 복합식품에는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 제12조 2(c)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가공된 꿀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고 「위원회 결정 2011/163/EU」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복합식품을 수입하는 식품사업자는 「규정 (EC) No 853/2004」 제6조 4항의 요건이 준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17. 조식용 시리얼처럼 식물성 식품으로 만들어지고 동물성 식품은 꿀만 함유된 제품의 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천연 꿀은 동물성 가공식품이 아니므로 천연 꿀이 함유된 최종식품은 복합식품이 아닌 천연 꿀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에 적용되는 공중보건 관련 요건은 「규정 (EC) No 852/200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식용 시리얼에 함유된 천연 꿀은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III의 제45장에 제시된 서식에 맞춰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위원회 결정 2011/163/EU」에 명시된 잔류물질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18. 마요네즈 등 일부 복합식품에 많이 쓰이는 건조 난황이 들어간 복합 식품 수입 시, 적절한 열처리 요건은 무엇인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I에는 난류제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기 위한 위험 완화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건조 난황에 대한 위험 완화 처리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조 난황이 함유된 난류 제품은, 계란 수거 전 30일간 HPAI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 및 반경 10km 이내에서 HPAI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물의 계란으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III의 제50장과 제52장에 각각 명시된 COMP 증명서

서식 II.3.D.1항과 TRANSIT-COMP 증명서 서식 II.1.C.1항을 참고하십시오.

**2.19. 우리의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은 비타민 D3가 유일하다.  
이 복합식품의 EU 수출 요건은 무엇인가?**

해당 복합식품을 수입하는 식품사업자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D3 관련 요건(「규정 (EC) 853/2004」 제6조 4항)이 준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에 규정된 복합식품의 제3국 원산국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 복합식품의 원산국 관련 요건

복합식품의 원산국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과 요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온 보관(Non shelf-stable)**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EU의 동물보건, 공중보건, 잔류물질 관련 법률<sup>4</sup>에 의거하여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상온 보관(Shelf-stable)** 복합식품 중에서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 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은 그 안에 포함된 초유 기반 식품 또는 가공육의 EU 반입(육류제품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포함<sup>5</sup>)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에서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 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복합식품은 육류제품 또는 유제품 또는 수산제품 또는 난류제품의 EU 반입 및 각 제품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sup>6</sup>.

최종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식품 전체가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규정 (EC) No 1332/2008」 이나 「규정 (EC) No 1333/2008」, 「규정 (EC) No 1334/2008」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그러한 규정들에 의거하여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비타민 D3만이 유일한 동물성 가공식품인 경우, 해당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에 규정된 복합식품의 원산국 관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잔류물질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해당 복합식품에 포함된 각각의 동물성 식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국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규정 (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XVI절 1항에 기재된 젤라틴과 콜라겐, 고도정제 제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기등재된 다른 제3국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을 조달하는 경우,

4 Commission Decision No 2011/163/EU of 16 March 2011 on the approval of plans submitted by thir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Council Directive 96/23/EC OJ L 70, 17.3.2011, p. 40

5 4번 각주와 동일

6 4번 각주와 동일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그러한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결정의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제3국은 해당 결정에 등재가 이루어진 후에만 복합식품을 EU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에는 「위원회 결정 2011/163/EU」 제2조의 내역(statement)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최종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식품 전체가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규정 (EC) No 1332/2008」 이나 「규정 (EC) No 1333/2008」, 「규정 (EC) No 1334/2008」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그러한 규정들에 의거하여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비타민 D3만이 유일한 동물성 가공식품인 경우, 해당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19/625」에 규정된 복합식품의 원산국 관련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특정 복합식품과 특정 재료에는 동물보건 관련 규칙이 일부 적용됩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된 복합식품, 그리고 상온 보관용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은,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특정 동물성 식품의 EU 반입이 승인된 제3국에서 제조한 경우에만 EU 반입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상기의 복합식품을 EU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해당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에 규정된, 동물성 식품의 EU 반입과 관련한 동물보건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한 동물성 가공식품이 다음 중 한 곳에서 조달되어야 합니다.

- (1) 복합식품 제조가 승인된 제3국과 동일한 국가
- (2) EU 역내
- (3) 특정 위험 완화 처리 없이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이 경우 복합식품이 제조되는 해당 제3국 또는 그 영토나 구역도 동일 조건으로 EU 반입을 승인받아야 함)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만 포함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하단의 동물 보건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EU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a)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의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EU로 원유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 (b)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의 A열 또는 B열에 언급된, 우유의 원산 축종 관련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친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위험 완화 처리를 조건으로 유제품의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에 등재된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 (c) 착유한 축종과 관계없이 복합식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최소한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의 B열에 준하는 처리를 거친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VIII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규정 (EU) 2017/625」에 의거하여 원유 또는 유제품의 EU 반입을 승인되지 않았으나 육류제품이나 난류제품, 수산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이 승인된 제3국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 (d) 복합식품에 함유된 난류 제품이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0/692」 부속서 XXVIII에 준하는 위험 완화 처리를 거친 경우, 즉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404」 부속서 XIX에 등재된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복합식품은 「규정 (EU) 2017/625」에 의거하여 난류제품의 EU 반입을 승인되지 않았으나 육류제품이나 유제품, 수산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이 승인된 제3국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3.1.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으로 만든 육류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이 복합식품의 EU 수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은 무엇인가?**

해당 복합식품은 (동물보건과 관련하여) 육류제품 또는 유제품 또는



수산제품 또는 난류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을 승인받은 제3국(각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통제 포함) 또는 EU 회원국에서 조달한 동물성 가공식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귀하의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식품의 EU 수출 승인국으로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 (EC) 853/2004」 부속서 III의 XVI절 1항에 기재된 콜라겐과 젤라틴, 고도정제 제품은 동물성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3.2. 우리나라는 꿀에 대해서만 EU 수출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이 경우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육류제품이나 수산제품, 유제품, 난류제품의 EU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된 제3국만이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3.3. 우리나라는 수산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았다. 이 경우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이 포함되지 않고 초유 기반 제품도 포함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육류제품이나 유제품, 수산제품, 난류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이 승인된 제3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아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국이 자연산(wild catch) 수산 제품에 대해서만 승인을 얻어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4. 우리나라는 수산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았다. 이 경우 육류가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이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해당 복합제품에 함유된 육류제품의 EU 반입(잔류물질 통제 포함)을 승인받은 제3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3.5. 우리나라는 육류 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았다. 이 경우 유제품이**

### **함유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수출할 수 없습니다.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그 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EU의 동물보건, 공중보건, 잔류물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EU 반입을 승인받은 국가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 **3.6.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기만 하면, 어떤 복합식품이든 EU에 수출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합식품이 비상온 보관 식품인 경우, 이를 제조하는 (제3의) 국가는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EU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냉동피자에 들어가는 살라미와 앤초비, 치즈를 제조하는 제3국은 육류 제품과 수산제품, 유제품 모두에 대해 EU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합식품이 상온 보관 식품이고 가공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조하는 제3국은 육류제품이나 수산제품, 유제품, 난류제품 중 하나에 대해 EU 반입 승인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통제 포함). 아울러 복합식품 제조 시설이 소재한 제3국은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해당 복합제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유래한 축종 또는 제품 각각에 대한 EU 반입 승인국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초유 기반 제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에서 제외됩니다.

### **3.7. 제3국이 EU 승인 시설의 유제품을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경우, 2021년 4월 21일부터는 해당 아이스크림을 수출할 수 있는가?**

네. 해당 제3국이 (동물보건, 공중보건 및 잔류물질과 관련하여) 유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 목록에 등재된 경우 아이스크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3.8. 유제품이나 수산제품, 난류제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제3국은 자국이 승인받은 동물성 가공식품과 관계없이, 최종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기만 하면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는가?**

네. EU에 수출 예정인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초유 기반 제품이나 가공육이 함유되지 않으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초유 기반 제품이나 가공육이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이 그 안에 함유된 초유 기반 제품 또는 육류제품에 대해 EU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이 자연산 수산제품의 수출만 가능한 국가로 등재되어 있어 양식 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해당 제3국이 제조한 복합제품의 EU 수출은,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자연산 수산제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3.9. 우리나라는 복합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잔류물질 관련 요건은 무엇인가?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이 유래한 축종(소, 양, 돼지 등) 또는 미가공식품(우유, 계란 등) 각각에 대해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규정 (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XVI절 1항에 기재된 콜라겐과 젤라틴, 고도정제제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합식품에 유제품과 난류제품, 소고기 가공육이 포함된 경우, 제3국은 소와 우유, 계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아 상기 결정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은 EU 수출을 승인받은 또 다른 제3국이나 EU 회원국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이 조달되는 경우에도 상기의 결정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결정 등재를 위해 제3국은 상기 기술한 대로 동물성 가공식품을 조달하려는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복합식품의 EU 반입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특정 동물성 식품의 EU 수출을 승인받은 국가에서 해당 복합식품이 제조되어야 합니다. 복합식품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원산국 요건도 강화됩니다. 제3국이 특정 동물성 식품의 EU 수출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규정 (EU) No 2019/625」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잔류물질 모니터링 요건은 물론이고 동물보건 및 공중보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만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귀하의 국가가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10.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제3국은 수산제품의 EU 수출이 승인된 제3국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양식산) 수산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은 승인받았으나 유제품과 난류제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제3국이 EU 회원국 또는 EU 수출이 승인된 또 다른 제3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들어갈 유제품 또는 난류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복합식품을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할 수 있나?

귀하의 국가가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 각각에 대해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귀하의 국가가 해당 식품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았음을 의미하고, 또는 귀하의 국가가 상기 결정에 해당 제품의 EU 수출 승인국으로 등재된 제3국 또는 EU 회원국에서 해당 식품을 조달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가공식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도 그러한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3.11. EU는 제3국 소재 복합식품 제조 승인 시설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 있는가?

없습니다.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의 시설은 해당 국가의 소관 권한 당국이 등록해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권한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집행위원회의 무역통제전문가시스템(TRACES)에 등록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 유래 식품을 가공하는 시설은 EU의 승인과 TRACES 등록이 의무입니다. 아울러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의 시설에서 동물성 식품도 가공하는 경우 EU의 승인과 TRACES 등록이 필요합니다.

3.12.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을 모두 △EU 회원국 또는 △EU 수출 승인국에 등재된 제3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조달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어야 하나?

네. 언급하신 요건 외에 잔류화학물질 모니터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재료 각각에 대해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규정 (EC) No 853/2004」 부속서

III의 XVI절 1항에 기재된 콜라겐과 젤라틴, 고도정제제품 제외), 해당 재료를 EU 회원국을 비롯해 기타 EU 수출 승인국 목록에 등재된 제3국 (해당 축종 또는 제품에 대한 동물보건 및 잔류물질 모니터링 요건을 모두 승인받은 제3국)에서 조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재료들은 해당 제3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국가가 등재를 원하는 경우 상기에 기술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조달 의사를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국가는 「위원회 결정 2011/163/EU」의 부속서에 등재되기 전까지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3.13.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동물성 가공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로 「위원회 결정 2011/163/EU」에 등재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귀하의 국가에서 등재 요청 서한을 집행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3.14. 향후 EU는 EU에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특정 제3국 목록을 작성할 예정인가?**

네. 다만 작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목록 작성 전까지는 복합식품의 성격(상은 보관 가능 여부 및 육류 포함 여부), 그리고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기존 EU 수출 승인국 목록을 기준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3.15. 우리나라는 현재 「위원회 결정 2011/163/EU」 부속서에 EU 수출 승인국으로 등재된 품목이 없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기등재된 다른 제3국의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 4. 복합식품의 EU 수입 시 첨부되는 보증 서류

##### 4.1. 가공육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도 사설인증서(private attestation)가 항상 첨부되어야 하나? 일정 주기마다 인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나?

초유 기반 제품이나 가공육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모든 화물에 사설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가공육의 경우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은 제외됩니다.

##### 4.2. 복합식품의 첨부 서류에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

동물보건/정부(official) 증명서가 요구되는 복합식품의 경우, 동물보건 관련 요건은 공공수의사(official veterinarian)가, 공중보건 관련 요건은 증명서 담당 공무원(officer)이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

한편 사설인증서에는 제품을 수입하는 식품사업자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4.3. 가공육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사설인증서는 누가 검사하고, 어디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가?

가공육이나 초유 기반 제품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EU 반입 시 EU 지정 국경통제소에서 사설인증서를 검사합니다. 단, 해당 복합식품이 「규정 (EU) 2021/630」의 저위험 식품 목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검사 면제됩니다.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EU 회원국의 권한 당국은 도착지 또는 역내 유통 허가장소 또는 화물관리 사업자의 장치장(warehouse)이나 보세구역에서 자국의 통제 계획에 따라 통제조치/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4.4. 복합식품에 사설인증서 미첨부 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EU 회원국의 권한 당국은 EU 반입 시 EU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 (EU) 2017/625」에 의거하여 해당 화물을 압류해야 합니다.

##### 4.5.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에는 복합식품의 EU 반입 시 요구되는 동물보건/정부 증명서 서식이 제시되어 있다. 가공된 동물성 제품이 아닌 신선육(또는 손질육)이 함유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선육이 함유된 제품은 복합식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복합식품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신선육 또는 손질육과 관련된 증명서를 화물에 첨부해야 합니다.

### 4.6. 젤라틴이 함유된 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하려고 한다. 어떤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하나?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가공육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동물보건/정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동물보건 관련 위험이 없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단,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함유된 가공육 성분이 젤라틴뿐인 경우에는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V에 제시된 사설인증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육류에서 유래하는 콜라겐과 고도정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7. 우리나라는 젤라틴(또는 콜라겐이나 고도정제제품) 및 기타 가공육이 포함된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한다. 여기에 필요한 증명서는 무엇인가?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에는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III 제50장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동물보건/정부 증명서를 항상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복합식품을 제조한 제3국 권한 당국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 동물보건, 잔류물질 관련 요건의 준수를 권한 당국이 인증했다는 보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4.8. 우리나라는 「규정 (EU) 2021/630」에 등재된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예정이다. 첨부해야 하는 보증 서류는 무엇인가?

「규정 (EU) 2021/630」에 등재된 복합식품은 국경통제소의 공식통제가 면제되지만 EU 법률에 명시된 모든 수입 조건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사설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EU 회원국의 권한 당국은 도착지 또는 역내 유통 허가장소 또는 사업자의 보세구역이나 장치장에서 해당 제품 및 첨부된 사설인증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 4.9. 사설 인증서를 TRACES에 업로드해야 하나?

반드시 업로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경 통제 의무가 있는 경우 국경통제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TRACES에 사설인증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4.10. 사설인증서는 서면으로 국경통제소에 제출해야 하나?

네. 국경통제소의 통제 대상 복합식품은 집행위원회의 무역통제전문가 시스템(TRACES)에 인증서를 업로드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경통제소에 인증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설인증서는 「규정 (EU) No 2017/625」 제89조와 제91조에서 정의한 정부증명서(official certificate)나 정부인증서(official attestation)가 아니므로, 사설인증서 스캔본을 공통위생통관서류(CHED, Common Health Entry Document) 파트 1과 함께 TRACES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경통제소의 공식통제가 면제된 복합식품은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에 사설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4.11. 사설인증서에 전자 서명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스캔하여 집행위원회의 무역통제전문가 시스템(TRACES)에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증명서와는 달리 TRACES상에서 전자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 4.12. 우유 생산 농가가 EU 역내에 있는 경우에도 농가 코드를 사설인증서에 기재해야 하나?

아닙니다. 가공 시설만 기재하면 됩니다.

#### 4.13. 사설인증서를 요하는 복합식품의 경우, 그 안에 함유된 유제품 재료에 대한 정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가?

아닙니다. 사설인증서의 보증만으로 충분합니다.

#### 4.14. 젤라틴이 함유된 복합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복합식품이 상온 보관용이고 육류제품



에서 유래한 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 정제 제품을 제외한 다른 가공육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설인증서의 보증만으로 충분합니다.

**4.15.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사설인증서 작성 시 복합식품에 함유된 재료의 비율 정보를 그룹화할 수 있는가?**

네. 예를 들어 모든 유제품 재료의 비율을 그룹화할 수도 있고 모든 식물 재료의 비율을 그룹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 비율을 그룹화하는 재료는 그 종류가 동일해야 합니다.

**4.16. 사설인증서 첨부는 제품별로 해야 하나, 아니면 화물별로 해야 하나?**

첨부 방식은 정부증명서와 유사합니다. 즉, 제품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가 첨부되어야 하고, 사설인증서는 제품의 배치(batch)별로 첨부해야 합니다.

**4.17. 복합식품의 원재료가 복합식품 자체인 경우, 두 제품 모두 사설인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나?**

최종식품이 「규정 (EU) 2019/625」 제12조에서 정한 복합식품인 경우 사설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인증서에 해당 복합식품에 함유되어 최종 복합식품 제조의 재료로 사용된 동물성 가공식품의 원산지 정보를 명시하면 됩니다.

**4.18. 우리의 복합식품은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식품이고 저위험 제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적절한 위험 완화 처리를 통해 동물보건상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사설인증서를 통해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4.19. 동물성 가공식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의 무역용 견본 및 전시용 제품, 시식용으로 수입된 무역용 견본, 실험용 견본을 제3국에서 EU로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들 제품도 화물별로 사설인증서가 필요한가?**

시장 출시 없이 제품 분석 및 품질 시험용 견본으로 쓰이는 식용 제품에는

「규정 (EU) 2019/62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설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20. CN 코드 1806으로 분류된 초콜릿 과자류(chocolate confectioneries) (상은 보관, 육류 미함유)는 EU에서 최초 제조되어 보관 목적으로 제3국에 수출되었다. 이 제품을 EU로 재수출 시 사설인증서만 첨부하면 되는가?

네.

4.21. 렌더링된 동물 지방이 함유된 복합식품에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렌더링된 동물 지방은 가공육에 해당합니다.

4.22. 경유 중인(in transit) 복합식품에도 사설인증서나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경유 중인 복합식품이란 제3국에서 제조되어 EU의 세관 통제에 따라 장치장에 보관되었다가 EU 회원국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고 제3국에 재수출되는 제품을 말한다.

아닙니다.

해당 복합식품은 EU 시장에 반입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식품의 EU 수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그러한 보증 서류를 첨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동물 보건상의 이유로 일부 비상온 보관 식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이나 가공육(젤라틴이나 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제외)을 함유한 일부 상온 보관 식품에는 특정 보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위원회 이행 규정 2020/2235」 부속서 III의 제52장에 기재된 TRANSIT-COMP 서식을 증명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4.23. 국경통제소의 검사가 면제된 복합식품의 경우 사설인증서 보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해당 복합식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4.24. 사설인증서에 서명하는 식품 수입 사업자의 대표는 EU에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나?**

네,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25. 소 또는 돼지 젤라틴이 함유된 제과 제품에 사설인증서가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제과 제품이 상온 보관 복합식품이고 그 안에 함유된 가공육이 젤라틴뿐인 경우 사설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26.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에 따라 국경 통제가 면제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복합식품도 사설인증서가 필요한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에 따라 국경통제소의 통제가 면제된 복합식품은 시장에 출시될 때 사설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소형 복합식품 화물로서, 시장 출시용이 아니고 「규정 (EU) 2019/2122」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설인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27. 우리는 여러 복합식품을 하나로 포장해 수출한다. 이 경우 복합식품 별로 인증서를 작성해야 하나?**

네. 여러 복합식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는 경우 복합식품별로 사설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CN 코드가 각기 다른 복합식품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사설인증서에 기재되는 정보가 모두 동일하고, 특히 해당 복합식품들이 모두 동일한 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설인증서에 여러 복합식품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설인증서에 여러 복합식품을 기입하는 경우에도, I.27칸의 '제품 정보'를 비롯해 4항 '재료 목록' 및 5항 '승인 시설 목록'의 내역은 복합식품별로 구분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4.28.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배치(batch)가 여러 EU 회원국에 나뉘어 유통되는 경우, 로트별로 사설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아울러 사설인증서를 도착 예정 EU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나?**

사설인증서의 원본은 해당 인증서에 명시된 최초 수입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에는 로트별로 인증서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원본을

도착 예정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수입자는 EU 내에서 해당 제품의 이력추적을 보장해야 합니다.

**4.29. 사설인증서에 차량 번호판과 선박 정보도 기입해야 하나?**

네.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0/2235」 부속서 V에 규정된 인증서 서식에 따라, I.15칸에는 운송 수단(항공, 철도, 선박, 육로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I.19칸에는 컨테이너 번호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선(ferry)을 제외한 해상 운송 수단의 경우 선박의 명칭과 컨테이너 번호가 모두 사설 인증서 및 공통위생통관서류(CHED)의 파트 1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4.30. 복합식품 제조 시설이 EU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 증명서의 1.11칸에는 어떠한 내용을 기입하나?**

EU 승인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등록 번호는 선택 사항이며 증명서의 해당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4.31. 관련이 있는 경우, EU에 반입되거나 EU를 경유할 예정인 복합식품의 필수 증명서에서 파트 1 I.27칸의 '화물 정보'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I.27칸에는 CN 코드와 포장 형태, 포장 수량, 순중량, 배치 번호(해당 시), 최종 소비자(최종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경우 칸에 체크), 해당 시 제조사의 승인 번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 중간 냉장창고(cold store(s))의 주소 및 승인 번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아울러 증명서 하나에 여러 제품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제품당 한 줄씩 여러 줄에 걸쳐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5. 국경 통제

### 5.1. EU 반입 시 공식통제(official contrls)가 필요한 복합식품은 무엇인가?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21/632」의 부속서에 기재된 복합식품은 모두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에 기재된 저위험 복합식품은 도착지 또는 역내 유통 허가장소 또는 화물 관리 사업자의 장치장이나 보세구역에서 통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5.2. EU의 국경 통제가 면제되는 복합식품 목록이 수정될 수도 있는가?

네.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의 면제 대상 복합식품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사설인증서를 첨부할 수 있는 복합식품은 모두 국경 검사가 면제되는가?

아닙니다.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에 기재된 복합식품만 EU의 국경 검사가 면제됩니다. 단, 도착지 또는 역내 유통 허가 장소 또는 화물 관리 사업자의 장치장이나 보세 구역에서 통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5.4.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요건은 「위원회 결정 2007/275/EC」에 명시된 저위험 복합식품에도 적용되는가?

네. 「위원회 결정 2007/275/EC」 부속서 II의 저위험 복합식품 목록은 「위원회 위임 규정 (EU) 2021/630」의 개정 목록으로 대체됩니다.

이 (개정) 목록에 포함된 복합식품은 국경통제소에서 공식통제는 면제되지만 도착지 또는 역내 유통 허가장소 또는 화물관리 사업자의 장치장이나 보세구역에서 통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복합식품에는 사설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식품은 전과 동일하게 EU 회원국에서 제조되거나 또는 동물성 가공식품의 EU 수출이 승인된 (이에 따라 동물보건 및 잔류물질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5.5. 육류가 함유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국경 검사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복합식품은 서류 검사(documentary checks)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식별(identity) 및 물리적(physical) 검사의 시행 빈도는 「위원회 이행 규정 (EU) 2019/2129」를 따릅니다.

\*\*\*